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3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0.
-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를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Ⅲ. 검토의견: 가맹본부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33조(시정조치) ① ----- ----- ----- ----- ----- -----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u>제14조의2제5항</u> ,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u>제14조의2제3항·제5항</u>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u>제14조의2제5항</u> ,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5조(과징금) ① ----- ----- ----- ----- ----- ----- ----- ----- ----- ----- <u>제14조의2제3항·제5항</u> ----- ----- ----- ----- ----- -----

현행	개정안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4조의2¹⁾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1)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2023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³⁾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주요 협의내용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①신메뉴·신제품 출시 및 상품 리뉴얼(26.1%), ②가맹점 운영정책 협의(20.8%), ③광고·판촉행사 등 협의(20.2%), ④영업정책 공유(18.5%) 등임.

이러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수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임에도 협의를 위한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 및 과징금)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

2)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개별 가맹점주 중 54.3%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약 53.1%(전체 29.0%)의 가맹점주가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협의 요청 불응 사유를 주로 무응답, 회원명부 요구, 다른 가맹점단체와의 교섭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3) 2023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공정거래위원회, 2023.12.27.)

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등록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빈번히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의견 충돌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등 공적 절차를 통한 단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의 요청에 대해서만 협의 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요청을 규율할 수단도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고,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올해 12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⁴⁾가 시행될 예정인바,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자발적인 협의 문화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

4)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12월 5일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